

2011. 11. 18.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333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일 자	회 부 일 자	상 정 일 자	의 결 일 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의무부담 동의안	2011 11.9.	2011. 11.9.	2011. 11.14.	2011. 11.18.	지역개발 과장	

2. 제안설명요지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며,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인수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출자규모

- 자 본 금 : 50억원(당초 200억원)
- 출 자 액 : 10억원(변동 없음)
- 출자비율 : 20%(당초 5%)

나. 의무부담

- 준공 3년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충주시에서 인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안건은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0억원(총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과,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본 안건과 관련하여는 지난 10월 11일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여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므로 필요성,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음.

가. 출자동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1항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올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음.(과업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의해 설립)

용역결과 SPC 설립에 따른 충주시의 적정 출자비중은 자본금의 20%이상 25% 미만, 적정 자본금 규모는 110억원 규모 이상이나 50억으로도 사업 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제67조의2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선수분양을 위한 조건으로 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의 출자금액 및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주신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 충주시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 되어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구증가, 세 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분양이 저조할 경우 시 재정에서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바 의원님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1) 질의 : 자본금을 줄인 이유는?

답변 : 당초 자본금은 200억원이고 출자비율은 5%이나, 5%로는 선수분양 등에 문제가 있음. 자본금을 그대로 두고 출자비율을 높이면 출자금 채원조달에 부담이 있음. 용역 결과 자본금 50억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음.

(2) 질의 :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여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적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충주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거 아닌지?

답변 : 이 사업은 시행사에서 책임준공을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 동의안
: 원안가결